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전화번호 :)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4⑫	벤처기업 투자신탁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조합·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4⑫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4의2④	투융자집합투자 기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80⑧	개인연금저축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80의2⑧	연금저축		()사망 ()천재·지변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80의3⑧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천재·지변 ()해외이주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81⑦	장기주택마련 저축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81⑦	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81⑫	주택청약종합 저축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의4④	공모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3⑩	세금우대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2의13⑤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⑧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2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4⑯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6⑪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7⑨	청년희망적금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8⑦	청년도약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5. 폐업: 폐업증명원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여야 합니다.